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77
----------	------

2021년 6월 1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5월 28일, 이병도 의원 외 29명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다. 상정일자: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병도 의원)

가. 제안이유

-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5조).
- 1회용품 사용 제한 방안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위협 등 전지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는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이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이를 보완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범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목표	'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정책방향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적 이행 ◆ 시민주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전략>

동 대책의 핵심은 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데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기관과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에 있음.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하나,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내용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며, 자원재활용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본 조례안은 생활패턴의 변화,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1회용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이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책무(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교육·홍보(제7조), 표창(제9조)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조(제 목)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목적 자원 절약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삶의 질 확보 - 1회용품, 가회용품, 공공기관 등의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 관련 시책 수립, 교육홍보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의 사항 명시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1회용품 구입 예산 편성 제한 권고
제7조~제9조	- 교육홍보, 시민 참여 활성화, 표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한 것으로 1회용품과 다회용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기관을 서울특별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서울특별시의회,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 청사 내 또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구매·사용의 제한과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홍보와 시민참여 활성화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내용이나 그 체계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바, 이후 상호 조례 간 중복 규정 문제를 해소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 나. 서울특별시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사용

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청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

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